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합506603(본소), 2020가합548966(반소) 판결
[최소로인한부당이득반환 · 매매대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2032065(본소), 2021나2032072(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합50660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용, 주동진, 박은정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허근녕, 신소양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오인숙, 장호영

변론 종결2021. 6. 8.

판결 선고2021. 7.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0,621,300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6.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79,415,252원 및 그 중 2,243,104,000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0. 4. 24.까지 연 6%,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79,241,400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20. 4. 24.까지 연 6%,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657,069,852원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32,746,616원 및 그 중 65,125,316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67,621,300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인천 서구 C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인 'D' 건물(이하 'D'이라 한다) 중 아래 표 '호실 번호'란 기재 각 호실(이하에서 각 호실을 아래 표 '구분'란 기재와 같이 '가계약호실', '매수호실', '계약호실'로 구분하여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계약(가계약호실) 또는 매매계약(매수호실, 계약호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가계약호실', '매수호실', '계약호실'로 구분하여 특정할 때는 '가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가계약', '매수호실에 관한 매매계약',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지급된 매매대금'란 기재와 같이 가계약호실에 관하여 가계약금으로 합계 2,200만 원, 매수호실에 관하여 계약금 및 잔금으로 합계 2,243,104,000원, 계약호실에 관하여 계약금으로 합계 179,241,4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매수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 '소유권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계약 호실	E	2017. 12. 1.		2017. 12. 1.	2,000,000		
F	2017. 12. 1.		2017. 12. 1.	2,000,000			
G	2017. 12. 1.		2017. 12. 1.	2,000,000			
H	2017. 12. 1.		2017. 12. 1.	2,000,000			
I	2017. 12. 1.		2017. 12. 1.	2,000,000			
J	2017. 12. 1.		2017. 12. 1.	2,000,000			
K	2017. 12. 1.		2017. 12. 1.	2,000,000			
L	2017. 12. 1.		2017. 12. 1.	2,000,000			
M	2017. 12. 1.		2017. 12. 1.	2,000,000			
N	2017. 12. 1.		2017. 12. 1.	2,000,000			
O	2017. 12. 1.		2017. 12. 1.	2,000,000			
합계(원)		22,000,000					
매수 호실	P	2017. 9. 6.	2017. 10. 16.	2017. 9. 6.	18,444,600		350,447,400
Q	2017.	2017. 9. 15.	2017.	18,444,600		350,447,400	

가계약 호실	E	2017. 12. 1.		2017. 12. 1.	2,000,000		
	8. 7.		8. 7.				
R	2017. 9. 4.	2017. 11. 23.	2017. 9. 4.	18,444,600		350,447,400	
S	2018. 1. 8.	2018. 5. 25.	2018. 1. 8.	29,735,700	2018. 5. 25.	249,954,633	
T	2018. 1. 8.	2018. 5. 25.	2018. 1. 8.	29,735,700	2018. 5. 25.	249,954,633	
U	2018. 1. 8.	2018. 5. 25.	2018. 1. 8.	29,735,700	2018. 5. 25.	249,954,634	
V	2018. 1. 8.	2018. 2. 20.	2018. 1. 8.	29,735,700	2018. 2. 20.	267,621,300	
합계(원)		174,276,600		2,068,827,400			
총합계(원)		2,243,104,000					
계약 호실	W	2018. 1. 10.		2018. 1. 10.	30,876,700		
X	2018. 1. 8.		2018. 1. 8.	29,421,900			
Y	2018. 1. 8.		2018. 1. 8.	29,735,700			
Z	2018. 1. 8.		2018. 1. 8.	29,735,700			
AA	2018. 1. 8.		2018. 1. 8.	29,735,700			
AB	2018. 1. 8.		2018. 1. 8.	29,735,700			
합계		179,241,400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25. 가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가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 합계 2,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3.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매수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명목의 비용 합계 565,031,562원을 지출하였다.

재산세(원)	679,720	679,720	679,720	518,970	518,970	518,970	518,970
관리비(원)	977,680	567,880	567,880	557,210	2,388,130	2,653,740	2,386,300
전기시설 비용 등(원)	17,580,00 0	17,580,00 0	22,743,52 0	16,540,50 0	18,000,00 0	18,000,00 0	16,170,00 0
모자분리1)	2,220,233	2,220,233	2,220,233	-	3,630,000	-	-

재산세(원)	679,720	679,720	679,720	518,970	518,970	518,970	518,970
동일 전기사용 장소 내에서 전기사용 용 도(계약종별) 가 다르거나 회계 단위가 상이한 둘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변압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 을 체결하고 따로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원)							
채굴장시설 비용(원)	47,327,135	24,248,359	31,505,695	72,279,035	57,667,931	47,794,642	54,802,291
취득세(원)	8,531,660	8,887,260	8,571,460	6,933,790	6,933,790	6,933,790	6,977,890
등록비(원)	379,000	379,000	379,000	246,913	246,913	246,913	346,400
대출이자(원)	1,499,095	1,506,004	1,625,105	1,171,336	2,388,130	6,776,584	7,327,862
합계	79,194,523	56,068,456	68,292,613	98,247,754	91,773,864	82,924,639	88,529,713
총 합계(원)							
565,031,562							

라. 원고는 2018. 1.경 계약호실의 전기 모자분리 공사를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자분리비용 및 전기료로 합계 33,029,190원을 지출하였다.

W	1,750,430	3,630,000	5,380,430
X	1,717,280	3,630,000	5,347,280
Y	1,945,370	3,630,000	5,575,370
Z	1,945,370	3,630,000	5,575,370
AA	1,945,370	3,630,000	5,575,370

W	1,750,430	3,630,000	5,380,430
AB	1,945,370	3,630,000	5,575,370
총 합계(원)	11,249,190	21,780,000	33,029,190

마. 원고는 2018. 1.경 가계약호실의 전기 모자분리 공사를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자분리비용 및 전기료로 합계 59,009,100원을 지출하였다.

E	1,750,430	3,630,000	5,380,430
F	1,750,430	3,630,000	5,380,430
G	1,740,430	3,630,000	5,370,430
H	1,750,430	3,630,000	5,380,430
I	1,750,430	3,630,000	5,380,430
J	1,717,280	3,630,000	5,347,280
K	1,750,430	3,630,000	5,380,430
L	1,717,310	3,630,000	5,347,310
M	1,717,310	3,630,000	5,347,310
N	1,717,310	3,630,000	5,347,310
O	1,717,310	3,630,000	5,347,310
총 합계(원)	19,079,100	39,930,000	59,009,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5, 18, 19, 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7년 6월경부터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를 판매하고, 채굴기를 구매한 구매자들로부터 채굴기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탁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주고 위탁관리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하였고, 이 사건 각 호실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인 D에 가상화폐 채굴업을 하는 법인은 입주할 수 없고, 이에 따라 D의 관리기관인 AC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에 입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D에 가상화폐 채굴업의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그 가부가 불확실함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가상화폐 채굴업의 입주가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설령 피고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려고 한 동기는 피고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내용으로 편입되었으며, 원고의 위 착오는 피고의 적극적인 홍보행위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거나 피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은 가상화폐 채굴장의 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체결한 것인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재 등으로 인하여 계약호실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계약호실에 관하여는 추가로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2,422,345,400원(매수호실 계약금 및 잔금 2,243,104,000원 + 계약호실 계약금

179,241,400원)과 민법 제203조 제1, 2항에 따른 비용상환,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등 합계 657,069,852원(매수호실 비용 합계

565,031,562원 + 계약호실 전기료, 모자분리비용 합계 33,029,190원 + 가계약호실 전기료,

모자분리비용 합계 59,009,100원)을 합한 3,079,415,252원 및 그 중 매매대금 합계

2,422,345,400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48조 제2항 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비용 등 합계 657,069,852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8. 5. 25. 가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가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가계약호실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호실을 가상화폐 채굴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자신의 계획에 따라 호실별로 363만 원의 공사비용 합계 3,993만 원을 들여

모자분리 공사를 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가계약호실에 관한 전기요금

기본료, 변압기 가동에 따른 누수전기료 등 전기료 19,079,100원이 발생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모자분리 시설 설치에 따라 가계약호실에 3,993만 원

상당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하고 위 전기료 상당액을 면제받는 이익을 누리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모자분리비용 3,933만 원과 전기요금

19,079,100원을 합한 59,00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참조).

(2)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3, 16, 17, 23~29, 31, 33, 35 38, 39, 41, 43, 53,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4.경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D이 충분한 전력 수급, 높은 층고, 전용 차량진입, 각종 세금 및 복지 혜택 등 가상화폐 채굴업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AD호를 Mining Room 및 관리실로 사용, 그 외의 호실을 Mining Room으로 사용, 각 호실 별 차량진입으로 신속하게 Mining Room 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입주제안서를 보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D의 분양을 위해 D 홈페이지나 AE(인터넷주소 2 생략)와 같은 가상화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D이 가상화폐 채굴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로 많은 혜택을 주고 분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17. 5. 22. 인천광역시 고시 AF로 'C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위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업종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입주대상 업종에 정보통신산업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2017. 9. 11. 인천광역시 고시 AG로 '인천 C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정정)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유치업종으로 정보통신산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12. 15.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 입주 단속 이행 협조요청', 2018. 2. 9.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내 불법입주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시장 및 도지사에게 '산업집적법 제2조에 의거,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가상통화 채굴업의 입주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위 각 공문은 2017. 12. 18.과 2018. 2. 14. C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AC공단에 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 22.경 인천광역시 관할 산업단지에서 가상화폐 채굴업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 등을 본 후 피고에게 D에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업만 입주 가능한 건물에 입주를 하여 단속이 된 것이고, D은 통신관련 업종이나 IT기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이라서 가상화폐 채굴업도 입주가능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D 홈페이지 '자료실'에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블록체인기술 정보통신에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마)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4. 18. 전국 시장 및 도지사에게 '가상통화 채굴업체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요청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가상통화채굴업(행위)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은 AC공단을 통해 2018. 4. 19. 피고에게도 전달되었다.

(바) AC공단은 원고에게, 2020. 3. 23.경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부터 암호화 자산 취득활동의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됨을 통보받았다. 공단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2018. 11. 27.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코드: 62090-1)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받아 통계청에서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의거하여 원고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2018. 11. 28.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완료하여 주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545-(2020. 3. 10.)호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의거하여 입주가 제한됨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20. 4. 10.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암호화 자산 취득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 관리하고 운영하는 산업 활동인 블록체인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코드: 62090-1)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이니 지식산업센터 D 입주가능업종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가능업종 입주계약 승인 후 사업을 영위할 것.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미제출 시 입주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2021. 1. 7.경에도 '블록체인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코드: 62090-1)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이니 지식산업센터 D 입주 가능 업종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2021. 1. 22.까지 제출하여 입주가능 업종 입주계약 승인 후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 8.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자격 등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가상화폐 채굴업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와 산업직접법 제2조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에서 해당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2) 그러나 갑 제4~15, 21, 31, 36, 37, 41호증, 갑 제57호증의 2, 갑 제6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7, 14~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을 제31호증의 1, 을 제3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그 가부가 불확실함을 알면서도 확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매수호실 중 S, T, U호의 잔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2.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며, 매수호실 중 S, T, U호의 미지급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합의를 하였고, 아래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 2018. 12. 28. 합의를 할 당시에는 매수호실과 계약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원고 주장의 의사표시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잔금 지급 및 합의로써 매수호실과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25. 합의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6. 2. 15.경 인천광역시에 '지식산업센터(D)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개 업종 외에 산업집적법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까지 입주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6. 2. 22.경 피고에게 'C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제시된 20개 업종은 제조업 중 입주 가능한 업종을 의미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도 입주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7. 10. 10.경 통계청에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컴퓨터 자료처리시설 관리, 컴퓨터 시스템 설치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산업분류상 무엇으로 분류되는지를 질의하여, 2017. 10. 24.경 통계청으로부터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는 위 인천광역시장의 회신과 통계청의 답변을 기초로 가상화폐 채굴업이 D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D이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홍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통계청은 2018. 1. 22. 통계기준과-225 공문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 관련 회신(가상통화

채굴 서비스)'에서 '가상통화 채굴과 관련하여 컴퓨터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채굴 서비스)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고 하였고, 2018. 7. 27. 통계청 고시 제2018-269호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에서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 자산 취득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 관리하고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10. 17. '블록체인산업이 정보통신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블록체인산업의 사업내용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상 정보통신산업에 포함된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은 2018. 7. 30. C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AF, 2017. 5. 22.)을 개정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되어 정보통신산업도 C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인 D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포함되었고, AC공단은 2018. 11. 말경 원고와 S, T, U, V호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에 가상화폐 채굴업의 입주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관련 기관에서도 확립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다만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한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고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피고의 광고가 D에서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기는 하였으나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상 이를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광고의 주된 취지는 D이 가상화폐 채굴업에 적합한 시설로서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10층과 11층은 약 30억 원의 자금을 들여 전력라인을 새로 구성하여 각 호실에서 직접 전력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하였다는 등 D이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Q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제7조)는 '을(원고)은 산업집적법 및

C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며'라고 정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충분하지 않고 가상화폐 채굴업이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거래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그러한 매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 등의 검토를 통해 스스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을 전문으로 하였던 회사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중요한 자산에 대한 거래로서, 당사자가 당해 거래의 특질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약사항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입주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과 입주계약 미체결에 따른 제한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2018. 1. 22.경 인천광역시 관할 산업단지에 가상화폐 채굴장 입주가 불법이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후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는 '제조업만 입주 가능한 건물에 입주를 하여 단속이 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통신관련 업종이나 IT기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이어서 가상화폐 채굴업도 입주가 가능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나, 다른 한편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하였는바, 피고의 답변 내용은 D에 가상화폐 채굴업 입주가 가능하다는 피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보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D 홈페이지 '자료실'에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블록체인기술 정보통신에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가 '산업집적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블록체인산업도 포함되는지'를 물은 민원 신청 내용과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10. 17.자 답변이었다(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39호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2018. 1. 22.경 인천광역시 관할 산업단지에 가상화폐 채굴장 입주가 불법이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AH(이하 'AH'라

한다)에 'D에서 채굴기를 통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업체로 향후 강화되는 정부 규제를 대비하여 법인등기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할 업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2018. 4. 6. AH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시설이 산업집적법 상 입주자 허용되는 사업 목적 시설임이 분명해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업 업종 분류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통계청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가상화폐 채굴업을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62090)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 업종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업종 중 정보통신산업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62090)을 법인등기부에 추가할 것을 권유한다.', 'AH도 2018. 4. 3. 통계청에 가상화폐 채굴업에 대한 업종 분류를 질의하였고, 통계청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62090)으로 분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62090)은 정보통신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등기부 목적사항에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62090)을 추가하고 가상화폐 채굴업을 운영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이다.', '향후 정부는 가상화폐 채굴업에 대해 명확한 업종 정의를 내릴 것으로 보이나 공식적인 업종 분류가 확정되더라도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판단하는 것이므로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입주상태 지속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이 가상화폐 채굴을 명확히 정보 기술(IT) 업종으로 분류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업을 정보기술(IT) 업종으로 분류하려면 가상화폐 채굴이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업종 정의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의 정책방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아) 위 (바)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AH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2018. 4. 6.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에 따라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8. 5. 16.경 피고에게 계약호실에 관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음에도(위 요구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는 없고 전매를 통한 회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인 2018. 5. 25.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매수호실 중 S, T, U호의 잔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8. 12. 28.에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호실에 관하여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매할 수 있도록 잔금 납부기한을 2019. 10. 30.까지 연장하고, 매수호실 중 S, T, U호의 미지급 잔금 지급기한을 2019.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6.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4166호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하면서, AI호에 관하여는 피고가 계약 당시 원고에게 약속한 전력을 배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호실에 관하여는 채굴장 내부의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은 채굴환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채굴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모자분리비용, 전기료의 반환을 구하고, 가계약호실에 관하여는 가계약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모자분리비용, 전기료의 반환을 구하였을 뿐, 기망 또는 착오 주장을 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및 비용 등에 관한 비용상환,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은 계약호실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원고가 계약호실을 소유한 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사용하려 하였는지 여부는 위 매매계약의 동기에 불과하며, 원고는 계약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계약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 계약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의 목적인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계약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이 계약내용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계약호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고도 2018. 12.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한 이상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계약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모자분리비용, 전기료에 관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계약호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가계약호실에 관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전기 모자분리 공사를 시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전기 모자분리 공사는 가계약호실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을 나머지 건물 부분과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분리하는 공사로, 기본적으로 원고의 영업과 피고와 사이에 전기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공사이다.

따라서 모자분리 공사에 든 비용을 가계약호실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의 전기료는 원고가 전기 모자분리 공사를 시행,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여 전기요금 기본료, 변압기 가동에 따른 누수전기료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모자분리 공사에 든 비용과 위 전기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매수호실 중 S, T, U호에 관하여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잔금 5,300만원과 계약호실 중 Y호에 관한 잔금 267,621,300원, 매수호실 중 S, T, U, V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에서 정한 최초 잔금지급기한이었던 2018. 4.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2. 28. 합의를 작성하기 전까지 발생한 공용전기요금 10,901,755원과 2019. 1.분 공용전기요금 1,223,561원의 합계 12,125,316원을 합한 332,746,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5,300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S, T, U호를 매도하고, 각 2018. 5. 25.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각 호실에 관한 잔금 중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12. 28. 위 각 호실에 관하여 그때까지 미지급된 잔금의 지급기한을 2019. 6. 30.로 연장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267,621,300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Y호를 매도하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9,735,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호의 매매대금은 297,357,000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28. Y호의 잔금 지급기한을 2019. 10. 30.로 연장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267,621,300원(매매대금 297,357,000원 - 계약금 29,735,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267,621,300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반대급부인 피고의 Y호에 관한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과에 따라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2,125,316원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용전기요금을 12,125,316원으로 산출하여 그 지급을 구하나,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S, T, U호 잔금 5,300만 원과 Y호 잔금 267,621,300원을 합한 320,621,300원 및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참조) 그 중 5,300만 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신

판사강건우

판사김수연

1) 동일 전기사용 장소 내에서 전기사용 용도(계약종별)가 다르거나 회계 단위가 상이한 둘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변압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따로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